검사공무원 증표(제68조 관련)

(앞 쪽)

ス	<u>호</u>					
Z	님 명					
	덩 명					
ス	생 년 월 일					
	위의 사림	r은 「관광진흥 [*]	법」제78조제4	항에 따른	검사공무원임을	증명합니다.
		유효기건	<u>년</u> 년	월 월	일부터 일까지	
				Į	군화체육관광 시 · 도 지 시장·군수·구⇒	사 인

90mm×60mm[청색켄트지 120g/m²]

- 1.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.
- 2.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·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3.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 급받아야 한다.
- 4.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.
 -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